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및 수도권 결혼적령기 취업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Support Policy on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Employed Men and Women

- Focusing on Unmarried Employed Men and Women of
Marriageable Age Residing in the Seoul City and Metropolitan Area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박주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ark, Ju-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support policy on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employed men and women. The study subjects included 300 unmarried working men and women aged over 30 years resid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ubjects' overall tendency towards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support policy and towards marriage intention, the marriage support policy gained the highest level of support in relation to housing for newlywed couples, which scored 3.29 (sd=.93), followed by improvements in corporate and family culture for the purposes of work-family compatibility at 3.24 (sd=.95), wedding loans at 3.18 (sd=1.01), and the paid leave system for marriage preparation at 3.12 (sd=.88). These variables scored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3 points. Conversely, satisfaction with the availability of marriage-related information

* 이 논문은 201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박주희(pjh@sungshin.ac.kr)

and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dating scored 2.65 (sd=.88) and 2.78 (sd=.80), respectively, both of which were slightly lower than the median of 3. The overall mean score for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support policy was 3.03 (sd=.95),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of 3. In regards to marriage intention, the score was 3.32 (sd=1.15) points out of a perfect score of 5,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This indicated a slightly higher level in terms of the subjects' intention to marry.

Seco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support policy on marriage intention among unmarried employed adul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were entered as control variables in the regression at the first stage, and variables relating to satisfaction in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were entered at the second stage. When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monthly income, period of employment, working hours, and type of employment were inserted in the first stage of regression as control variables, gender, monthly income, period of employment, and type of employment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arriage intention. Marriage intention was found to be greater in unmarried men with higher monthly incomes and longer periods spent working, and in unmarried working men and women engaged in tenured employment work. When variables relating to satisfaction with the marriage support policy were inserted in the second stage of regression, gender, monthly income, type of employment, and satisfaction with direct marriage support had significant effects on marriage intention. It was found that marriage intention was greater in unmarried men whose monthly income was higher, whose employment type was tenured work, and who showed greater satisfaction with direct marriage support.

Key Words : 취업미혼남녀(unmarried employed men and women), 결혼지원정책 (marriage support policy), 결혼의향(marriage intention), 일-가정 양립(work-family compatibility)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급격한 저출산 현상의 여러 요인들 중 특히 주목하는 것이 결혼의 기피나 만혼화 현상이다(김혜영 외, 2010) 이러한 현상은 혼인건수의 감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 통계'를 살펴보면, 혼인 건수는 28만 1천 6백 건으로 전년대비 7.0%(2만 1천 2백 건) 감소하였으며 조(粗)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5.5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였다. 또한 미혼의 연령대 비중에서

30대 미혼 인구가 전체 미혼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해가고 있다. 2000년 4.2%에서 2010년에는 7.9%로 배에 가까이 높아진 점(서울시 정보기획단, 2011)을 볼 때 만혼화의 추세의 보편화를 확인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서구사회에 비해 동거와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자녀출산이 보편적이기에 만혼화 현상과 같은 결혼의 지연은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중백, 2013).

한편 결혼율의 저하는 저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시장의 위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과급 또한 클 수 있기 때문에 결혼적령기 성인의 결혼기피의 구체적인 원인 진단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즉,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되는 젊은 남녀의 결혼의향에 관한 분석 및 사회환경적 요인의 정확한 분석은 향후 가족 정책의 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결혼의향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중백(2013)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비혼 상태의 지속은 일반적으로 결혼과 결혼생활 지속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원 미흡의 측면과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규범 약화의 측면에서 찾았다. 또한 미혼자의 결혼의 기피나 결혼의 결정요인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에 따르면(Amato, 1988; Jennings, Salts & Smith, 1991; Muench & Landrum, 1994; Salts et al., 1994) 미혼 인구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과정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개인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은(박경숙 외, 2005; 유홍준·현성민, 2010) 최근 우리사회가 전반적인 경기침체 흐름에서 청년층들이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의 어려움과 학력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균형 등으로 청년층이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 준비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비혼 상태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혼지연이 사회구조적·거시적 차원에 있음을 나타내며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효율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결혼가치관은 개인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결혼 계획이 있음에도 사회구조적·거시적 요소들에 의해 결혼을 지연하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일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과 가족의 형성은 지극히 개인적 선택일 수 있지만 만혼 및 혼인의 연기는 저출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향후 저출산 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

의 정책들이 전개되어 왔는데 즉,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5-2010)’에서는 ‘결혼·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강화’ 분야 아래 ‘신혼부부 출발 지원’이라는 정책과제를 통해 결혼을 지원하였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분야 내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통해 결혼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시켰다(변소정, 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결혼장려 정책’에 초점을 두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와 청년고용을 확대시키는 것을 정책화하고 있다. 이들 정책의 효과성 또는 정책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들 또한 일부 이루어졌지만(김혜영 외, 2010; 진달래, 2013) 결혼 적령기를 지나고 있는 미혼 남녀로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의향 요인과 결혼지원정책의 만족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초혼평균연령을 지난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 만족, 결혼의향 정도를 파악하고자하며 이들의 결혼의향에 결혼지원정책별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결혼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만족도,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의향의 개념 및 만혼화의 추세

결혼의향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혼의 제도적·기능적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혼은 전통적 관념에서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두 사람의 성인이 정서적·법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관계로 성인남녀가 합의하에 가정을 이루며 인간의 생활양식 중에서 가장 보편적 행동양식이며 제도이지만 결혼에 대한 태도나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기능적 속성을 지니는 결혼과 관련한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한 선택의 의미나 결혼에 대한 가능성의 의미로 접근해 볼 수 있다(임선영·박주희, 2014). 결혼의향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tein(1981)은 결혼의향에 대해 초기 적령기에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적령기가 지나가면서 더 이상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았다. 따라서 결혼의향이란 일정 연령까지 선택의 기회를 내포하지만 또 다른 연령대에서는 결혼의향이 결혼의 가능성 여부를 의미한다. 홍은영(2011)은 결혼의향을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하였다. 첫째는 결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결혼에 관한 선택적 기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접근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한 가능성의 정도를 묻는 의미로 정의하여 살펴보겠다.

한편, 결혼이 생애주기적으로 늦어지는 사회현상을 이를 만혼화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곧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사회적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혼화의 경향을 확인하는 보편적 방법은 바로 평균혼인연령을 확인함으로써 과거의 혼인연령 추이와 비교하는 것이다(김혜영 외, 2010). 지난 20여 년 간의 초혼연령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 평균초혼연령은 여성 24.5세, 남성 27.3세에서 2016년에는 30.0세, 32.6세로 약 20여 년 동안 4세 이상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6). 최효미 외(2016)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9세 미혼 남녀 1073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20대에 비해 30대인 경우 ‘결혼 의향이 있으나 연기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간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0대에 비해 30대에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의 지연과 관련해서 30대 남성은 결혼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3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혼 경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의 혼인연령은 지속적인 만혼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베커(Becker, 1973)는 ‘결혼의 경제학’ 이론을 적용하여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결혼으로 인한 효용이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베커의 명제를 우리사회에 적용해 보면 한국사회의 결혼기피 현상은 결혼으로 인한 효용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결혼 비용은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결혼의향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2. 결혼지원정책의 내용 및 발전과정

최근 우리사회의 만혼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학문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즉, 적령기 남녀들이 결혼을 기피나 연기가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통해 변화시키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결혼 계획이 있음에도 주변의 여건에 의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일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변소정, 2017).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2016)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미혼 응답자(2,383명) 중 87.0%가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초기 결혼지원정책은 농촌지역의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및 시민협동 결혼식을 시행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이었다(진달래, 2013). 그러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결혼지원에 대한 정책 대상이 일반 미혼자로 폭넓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먼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분야 아래 ‘신혼부부 출발 지원’이라는 정책과제를 통해 결혼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출산의 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제공과 지원제도 도입’은 연령 상승과 그에 따른 자녀가임의 기간적 단축이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만혼화 대응전략이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 200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분야 내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이 결혼지원 정책이다.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을 추진하였다(보건복지부, 2010). 즉,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소득 가정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녀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저출산 정책 및 신혼부부에 초점을 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일반 맞벌이 가정에 집중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초점을 두었다(변소정, 2017). 그러나 여전히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결혼지원 정책들은 미혼자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있다. 이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미혼·만혼자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미혼 인구 대상 정책이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에 포함되면서 결혼 포기·지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청년 일자리와 신혼부부 주거마련 대책을 이전보다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1)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인들

(1) 결혼지원정책과 결혼의향

미혼남녀의 가족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결혼지원정책과 결혼의향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혜영 외(2010)은 미혼여성들이 가장 선호한 결혼지원 정책은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 휴가 제도였으며,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과 결혼자금 융자, 직장-가정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결혼을 고려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진달래(2013)는 가족친화제도 중 출산지원제도, 유연근무제, 부양가족 지원제도의 인식이 남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는 결혼 관련정책에 관한 효율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2,383명을 대상으로한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통계청의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중 87.0%가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결혼 관련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청년 고용 안정화(26.4%), 신혼집 마련 지원(22.3%), 청년 실업 문제 해소(17.0%)순으로 꼽았다(통계청, 2016).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직업적 안정성 또는 경제적 안정성의 확보와 신혼부부 주거 마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혼 지연이나 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2) 성별

김혜영 외(2010)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만혼화 경향과 독신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의 효용가치가 갖는 성별적 함의를 강조하였다. 김두섭 외(2007)는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에 허용적임을 보고하였다. 김승권(2003)의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9.1%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부정적인 생

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연구에서도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71.4%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49.2%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은기수(1999)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생애과정을 거친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생애과정을 거친 사람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최근 미국의 경우, 남녀의 결혼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계층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층의 남성과 여성들은 결혼을 선택하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산층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결혼지연 및 포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Carbone & Cahn, 2014).

(3) 연령

서지희(2009)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결혼의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삼식(2006)은 고연령층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결혼시장에서 선택되지 못한 미혼남녀가 결혼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釜野さおり(2004)는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혔다.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의향에 대한 연령의 효과가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미혼남성에 비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연령과 결혼 의향과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적령기에 대한 연령기대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고선강과 여성연(2013)의 연구에서는 30대 초반 미혼자들에게는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30대 후반 미혼자들에게는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4)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관련해 교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초혼 연령이 높아진다고 다수의 연구들이 보고하였다(한경혜, 1990; 은기수, 1999; 김혜영 외, 2010). 즉,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혼 지연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미혼자들일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연구들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결혼의 진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이수진 2005; 김정석 2006; 서지희 2009). 그 이유를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확보한 여성이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결혼을 지연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이 존재함과 동시에 아직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집단공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5) 소득

소득과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선강, 2012; 山田, 1999). 취업여부는 남성의 경우 더욱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uth, 2001; 이삼식, 2006). 山田(1999)는 일본의 경우 전후 부모세대에서 중간계층의 삶이 실현되고 경제적 생활수준은 높아진 반면 경제 호황기에 자란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젊은 남성의 평균 수입으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고 중간계층의 삶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결혼적령기가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미국의 경우도 일본과 같은 현상으로 중간계층의 저소득으로 인한 가족부양의 부담으로 결혼을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Carbone & Cahn, 2014). 고선강(2012)의 연구에서도 미혼남녀의 자산의 측면에서 미혼남성의 경우 주택 소유 여부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부모들이 주택을 소유한 남성이 주택

을 소유하지 않은 남성에 비하여 결혼의 의향이 높았다. 이는 결혼결정에서 남성의 경제적 부담과 부모의 자산과의 관련성을 내포하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6) 직장관련 요인들

최근 청년층의 비정규직화의 증가 및 경제상황의 악화 또한 결혼의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윤자영(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정규직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가열과 천영민(2011)은 정규직과 대기업 종사자가 결혼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은기수(1999)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기간과 결혼할 확률이 비례적 관계로 나타났다. 오창섭과 최성혁(2012)은 임시직 비율이 상승하면 혼인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의 경우 윤자영(2012)의 연구에서는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여성에게 결혼에 이르는 경제적 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200~300만 원 미만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0만 원 이상이 34.3%, 100~200만원 미만이 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약 288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근무조건을 보면 고용형태가 정규직이 72.0%, 비정규직이 28.0%로 나타났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가 49.0%였으며 41시간 이상도 51.0%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에서는 1~5년 미만이 52.7%, 5년 이상이 28.3%, 1년 미만이 19.0%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약 46시간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3년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혼평균연령* 이상의 미혼남녀 취업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9월1일~20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325부를 배포하여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300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들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55.0%, 여성이 44.0%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0~34세는 69.1%, 35세 이상은 30.9%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 평균연령은 33.2세로 나타났다. 월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65	55.0
	여성	135	44.0
연령	30-34세	206	69.1
	35세 이상	92	30.9
평균: 33.15세(sd=7.78)			
교육 수준	고졸	84	28.6
	전문대졸	45	15.3
	대졸이상	165	56.1
월 소득	100만원 미만	7	2.3
	200만원 미만	63	21.8
	300만원 미만	126	41.6
	300만원 이상	104	34.3
평균: 287,88(sd=,20,57)			
고용 형태	정규직	216	72.0
	비정규직	94	28.0
근무 시간	40시간 이하	147	49.0
	41시간 이상	153	51.0
평균: 46.23(sd=8.25)			
근무 기간	1년 미만	57	19.0
	1-5년 미만	158	52.7
	5년 이상	85	28.3
평균: 3.01(sd=2.23)			
전체		300*	100.0

* 무응답으로 사례수가 다름

* 남성 32세, 여성, 30세(통계청, 2016).

2. 조사도구

1) 종속변수: 결혼의향

종속변수로 사용된 결혼의향은 ‘귀하는 결혼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결정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

결혼지원정책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결혼지원정책을 간접적 지원정책과 직접적 지원정책으로 구성한 김해경 외(2010)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즉, 간접적 지원정책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이성간의 만남의 장 제공,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제공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68로 나타났으며 직접적 지원정책은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휴가제도, 결혼자금융자, 직장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6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정책에 대해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선호한다=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시간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SPSS 18.0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미혼자의 결혼지원정책만족도,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였다. 미혼자의 결혼의향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측정도구

변수		문항수	신뢰도
종속변수	결혼의향	1	
독립변수	간접적 결혼지원 정책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68
		이성간의 만남의 장 제공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제공	
	직접적결혼 지원정책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76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휴가제도			
결혼자금융자			
	직장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		
통제변수	성별(남=1, 여=0) 연령 (연속변수) 교육수준(1=고졸, 2=전문대졸, 3=대졸이상) 소득(연속변수) 근무조건(1=정규직, 0=비정규직) 근무기간(연속변수) 근무시간(연속변수)	7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표 3), 먼저 결혼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로 가장 높은 것은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으로 3.29점(sd=.93)이었으며 다음으로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 3.24점(sd=.95), 결혼자금 용자가 3.18점(sd=1.01),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휴가제도 3.12점(sd=.88)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중간값 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결혼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은 2.65점(sd=.88), 이성간의 만남의 장 제공은 2.78점(sd=.80)으로 이 자원 대한 만족도는 중간값 3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취업미혼남녀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마련 정책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접적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2.78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3.18점으로 직접적

〈표3〉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 결혼의향

변수		M	SD
간접적 지원 정책 만족도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65	.88
	이성간의 만남의 장 제공	2.78	.80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제공	2.92	.91
	간접적 지원정책 전체	2.78	.85
직접적 지원 정책 만족도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3.29	.93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휴가제도	3.12	.88
	결혼자금용자	3.18	1.01
	직장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	3.24	.92
	직접적 지원정책 전체	3.18	.94
결혼지원정책 만족도 전체		3.03	.95
결혼의향		3.32	1.15

지원정책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지원정책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03점(sd=.95)로 중간값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결혼의향과 관련해서는 5점 만점 중 3.32점으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의지가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계층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는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결혼지원정책 만족도 변인을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29~.94로 잔차(DW)는 1.97~2.03으로 각각 정상범위 1이하와 2에 근접하고 있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1단계에서의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근무조건을 투입한 결과 ‘성별’($\beta=.16, p<.05$), ‘고용형태’($\beta=.28, p<.01$), ‘월소득’($\beta=.21, p<.01$), ‘근무기간’($\beta=.18, p<.05$)에서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2 은 0.148로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14.8%를 설명하였다($F=4.50, p<.01$). 즉, 미혼남성이고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결혼지원정책 만족도를 각각 하위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무기간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반면 ‘성별’($\beta=.13, p<.05$), ‘월소득’($\beta=.18, p<.05$), ‘고용형태’($\beta=.34, p<.001$), ‘직접적 지원정책’($\beta=.26,$

〈표 4〉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결혼의향			
	1단계		2단계	
	B	β	B	β
성별(남성=1, 여성=0)	.32	.16*	.23	.13*
연령(연속변수)	.03	.06	.06	.10
교육수준	-.09	-.08	-.05	-.06
월수입(연속변수)	.28	.21**	.08	.18*
근무기간(연속변수)	.34	.18*	.07	.11
근무시간(연속변수)	-.16	-.06	.05	.09
고용형태(정규직=1, 비정규직=0)	.86	.28**	.56	.34***
결혼지원 정책 만족도	간접적 지원정책 만족도		.08	.11
	직접적 지원정책 만족도		.18	.26**
constant	3.51		2.78	
Adjusted R ²	0.148		0.468	
F값	4.50**		40.35**	

*p<.05, **p<.01, ***p<.001

p<.01)에서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468로 2단계에서 설명력은 1단계보다 32.0%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46.8%를 설명하였다(F=40.30, p<.001). 즉, 미혼남성이며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지원정책의 직접적 정책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최근 우리사회는 결혼적령기를 넘어선 만혼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결혼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생애주기적인 발달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결혼기피 또는 결혼연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안정성 유지와 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지원정책에 관해 미혼자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의 효과 및 개선을 위해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은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결혼율의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연구이며 결혼과 가족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결혼한 적이 없는 취업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지원정책에 관한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평균초혼연령을 넘어선 30세 이상의 취업미혼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결혼지원정책만족도와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결혼지원정책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으

로 3.29점(sd=.93)이었으며 다음으로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 3.24점(sd=.95), 결혼자금 용자가 3.18점(sd=1.01),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휴가제도 3.12점(sd=.88)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중간값 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결혼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은 2.65점(sd=.88), 이장간의 만남의 장 제공은 2.78점(sd=.80)으로 이 자원 대한 만족도는 중간값 3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취업미혼남녀가 가장 만족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마련 정책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접적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2.78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3.18점으로 직접적 지원정책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지원정책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03점(sd=.95)로 중간값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결혼의향과 관련해서는 5점 만점 중 3.32점으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의지가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결혼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신혼부부 주택마련지원, 결혼자금 용자 및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휴가제도와 같은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김혜영 외(2010)의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결혼지원을 위한 미혼자 대상의 정책들 중 결혼상담 및 결혼준비교육,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확산의 지원과 같은 정책의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 나타나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결혼자금지원이나 주택마련지원은 결혼 전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효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상담 및 교육 영역에 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및 결혼 상담에 대한 미혼자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취업미혼자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는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결혼친화자원만족도 변인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의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근무조건을 투입한 결과 '성별'($\beta=.16, p<.05$), '고용형태'($\beta=.28, p<.01$), '월소득'($\beta=.21, p<.01$), '근무기간'($\beta=.18, p<.05$)에서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148로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14.8%를 설명하였다($F=4.50, p<.01$). 즉, 취업미혼자가 남성이며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결혼지원정책 만족도를 각각 하위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무기간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성별'($\beta=.13, p<.05$), '월소득'($\beta=.18, p<.05$), '고용형태'($\beta=.34, p<.001$), '직접적 지원정책'($\beta=.26, p<.01$)은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²은 0.468로 2단계에서 설명력은 1단계 보다 32.0%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46.8%를 설명하였다($F=40.30, p<.001$). 즉, 미혼남성이며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고 월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지원정책의 직접적 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취업미혼자의 결혼의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고용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혜영 외(2010)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정규직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의향에 성차가 뚜렷이 나타나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결혼의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결혼의향 정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현대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결과와 일치한다(김중백, 2013; Carbone & Cahn, 2014).

이러한 결과는 향후 미혼자의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결혼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간접적 지원형태인 결혼정보 제공이나 상담, 이성 간 만남의 장 제공,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보다는 직접적 지원방식인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이나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휴가제도, 결혼자금 융자,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들이 보다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자들의 결혼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 마련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자들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마련 지원이나 결혼비용 융자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으로 이 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혼자들의 주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의 안정화에 필요한 정책 지원이 우선해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미혼자들의 경제적 여건에 기초한 주택 마련 비용의 혜택 및 결혼비용의 융자를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주택과 금융지원에 관한 현재 정책의 검토뿐만 아니라 청년가구의 결혼 및 출산 문제와 연계한 주거지원대책의 보완 및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 현재 지원되고 있는 주택 지원이 모든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이 될 수 없고, 자금지원을 받는다 해도 감당해야 하는 대출은 여전히 장기적인 빚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다 안정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즉 청년의 경제적 능력으로 어려운 주거 마련을 위해 보다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결혼지원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국가재정 차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결혼지원 예산

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결혼과 가족복지지원의 독립적인 보험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 본다.

둘째, 직장과 가족생활을 양립시킬 수 있는 기업문화 및 가족문화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근로 개선, 가족친화 기업 문화 조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보육 시스템의 강화 등을 통해 미혼자들의 결혼의향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문화 및 가족문화의 개선으로 바탕으로 일-가정양립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자녀 교육과 돌봄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혼자들의 결혼의향을 고취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안정된 경제생활과 예측 가능한 결혼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을 계획하고 결혼을 한 후에 자녀출산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이 삶의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바탕이 되는 것은 직장의 안정성이다. 사회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규직에 종사하길 바라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고 정규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하고자 하는 미혼자들이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자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율의 저하가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저출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정책 및 결혼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미혼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결혼준비교육을 비롯한 바람직한 직장문화와 가족문화 확산에 필요한 상담과 교육

이 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건강 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기업 내 사내교육프로그램 등을 더욱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보급될 필요성이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성평등 교육의 촉진과 찾아가는 효과적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미혼남녀들이 결혼 전반에 대한 준비와 긍정적 기대를 갖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중매체 및 각종 언론을 통해 건강한 결혼문화의 촉진에 대한 홍보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혼의 지연은 또는 포기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비용과 이득을 고려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이에 결혼지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족수당과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제도 마련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가족지원 정책의 실천을 위한 독립적인 가족복지지원 사회보험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연구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결혼지원정책에 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의향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측정도구의 개발을 통해 결혼의향과의 관련성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 및 가정양립을 위한 부모권 보장정책에 관한 탐구문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모성보호지원제도, 직장내가족친화문화수용도, 육아휴직 급여의 정률제 및 근로자 복귀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여부를 포함하여 일-가정 균형, 일-가정 양립 등으로 구체화하여 그 만족 정도가 실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결혼지원정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함께 고려한 결혼지원정책을 평가할 때 정책개선 방안 및 대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일-가

정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도구와 관련해서 결혼의향을 측정하는 방식이 하나의 질문으로만 측정되어서 높은 수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향후에 시행될 연구에서는 결혼의향을 측정함에 있어 최근 변화되고 있는 결혼관이나 결혼행태를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결혼의향을 측정하길 기대한다.

둘째, 지역별 결혼의향 영향 요인은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비교분석을 통해 미혼세대의 결혼의향의 특성이 규명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서울시와 경기지역의 취업한 미혼자를 유의적 표집으로 이루어진 제한점을 갖는다. 표본의 선정 과정에서 정규직과 고소득 군으로 편중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는 미혼자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표집을 통해 미혼자 결혼의향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본 연구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의향의 관련 요인 연구로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취업자뿐만 아니라 미취업자를 포함해 다양한 조건의 미혼자를 포함하여 결혼지원정책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정교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결혼지원정책의 보완 및 확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결혼적령기를 넘어서신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정책적 대응에 중요한 기초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고선강(2012).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 이전의 호혜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03-121.
- 2) 고선강 · 어성연(2013). 30대 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 3) 김두섭 · 차승은 · 천희란 · 송유진 · 김정석(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연구: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4) 김승권(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86, 6-21.
- 5)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 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6) 김중백(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67-189.
- 7) 김혜영 · 선보영 · 김상돈(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 8) 박가열 · 천영민(2011). 대졸자 고용의 질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용정보원
- 9) 박경숙 · 김영혜 · 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유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10) 변소정(2017). 결혼 지원 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보건복지포럼, 249호, 45-60
- 11) 보건복지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12) 보건복지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 13) 보건복지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14) 서울시 정보화기획단(2011). 2011 통계로 본 서울남성의 삶.
- 15) 서지희(2009). 미혼취업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생활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오창섭 · 최성혁(2012). 저출산 원인의 실증분석: 혼인을 하락과 초혼연령 상승의 경제적 요인. 복지행정 논총, 22(1), 71-125.
- 17) 유흥준 · 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18) 윤자영(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19)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18(1), 89-117.
- 20) 은기수(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7-71.
- 21)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9.
- 22)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5(1), 131-156.
- 23) 임선영 · 박주희(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77-193.
- 24) 진달래(2013).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와 결혼장려 관련정책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최효미 · 유해미 · 김지현 · 김태우(2016).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26)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 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24, 103-120.
- 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29) 홍은영(2011). 미혼성인인의 결혼의향 및 태도와 부모의존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and Processes*, 50, 179-211.
- 31) Amato, P. R.(1988). Parental divorce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family-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0, No. 2, 453-461
- 32) Becker, G. 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813-846.
- 33) Carbone, J., & Chan, N. (2014). Marriage Market: How inequality is remarking the American family. Oxford University Press.
- 34) Jennings, A. M., Salts, C. J., & Smith, T. A. (1991). Attitudes toward marriage-effects of parental conflict, family-structure, and gender.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 17, No. 1-2, 67-79.
- 35) Muench, D. M., & Landrum, R. E.(1994). Family dynamics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Journal of Psychology*, Vol. 128, No. 4, pp. 425-431.
- 36) Salts, C. J., Seismore, M. D., Lindholm, B. W., & Smith, T. A.(1994).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premarital sexual-activity of college-freshmen, *Adolescence*, 29(116), 775- 779.
- 37) South, S. J.(2001). The variabl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the timing of first marriage; United States, 1969~1993. *Social Science Research*, 30, 606-626.
- 38) Stein, P. J.(1981). Single life: Unmarried adults in social context. St. Martin's Press: New York.
- 39) 釜野さおり(2004). 身女性の結婚意欲と出産意欲. 目依子·西岡八編, 少子化のジェンダ | 分析. 勁草書房, 107~123.
- 40) 山田 昌弘(Yamada Masahiro) 1999. 바라사이트 싱글시대. ちくま新書.

- 투 고 일 : 2017년 09월 01일
- 심 사 일 : 2017년 10월 10일
- 게재 확정일 : 2017년 11월 24일